#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72 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전현희·한준호·박균택

이정문・김승원・윤종군

김민석 · 조승래 · 박홍배

김영환 · 황정아 · 이기헌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,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, 언론·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, 고소·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·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(또는 단체)가 정치적,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,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(안 제312조).

법률 제 호

#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12조(고소)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및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12條(告訴와 被害者의 意思)	제312조(고소) 제307조부터 제309
① 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	조까지 및 제311조의 죄는 고
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	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
<u>수 있다.</u>	<u>있다.</u>
② 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	
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	
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.	